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공고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1차 정기공모사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선정율의 문제를 보완하고, 청년 예술인부터 원로 예술인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예술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그 동안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분야 공모사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거나 생애 처음으로 지원신청을 한 신진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지원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사각지대로 평가 받고 있는 원로 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로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대관을 지원하는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도내 예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의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차 공모사업이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예술 창작활동에 작은 응원과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접수기간:

2024.4.15.(월) -
2024.4.29.(월) 17:00



■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개요

○ 공모 구성

no.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청년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생애 1회 지급		· 3백만원
②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문학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및 교류 지원	· 5백만원
		시각	○ 시각예술 신작 전시발표 지원	· 5백만원
		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 8백만원 (개인) · 1천2백만원 (단체)
③	원로 예술활동 지원	문학	○ 문학 창작집 개별 출간 지원	· 3백만원
		시각	○ 시각예술 창작 또는 전시발표 지원	· 3백만원
		공연	○ 공연예술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 5백만원 (개인) · 1천만원 (단체)
④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 또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4백만원 (임차료) · 2백만원 (대관료)
⑤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예술 협동조합 혹은 예비 예술 협동조합 설립자 지원		· 1천만원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4.04.12.)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기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2024 경기예술지원 다중 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는 **사업 분야 간 다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한 분야만을 선택해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은 타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24.3.4. 결과 발표) 선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경우,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외 타 분야는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사례1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공연 분야’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다중 지원	가능
사례2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시각 분야’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다중 지원	불가능
사례3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지원	불가능
사례4	2024 경기예술지원 1차 공모 ‘모든예술31’ 선정자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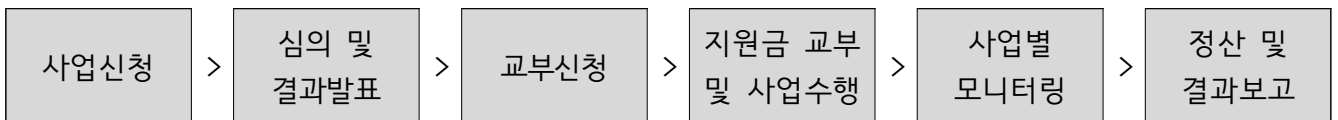
◆ 공통 유의사항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걸격 처리 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자료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선정 이후 사업 운영 시 회계검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담당자 개별안내 예정)
- 선정 이후 사업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있습니다.
- 경기도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는 선정 후에 제출합니다.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주민등록초본 상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것과는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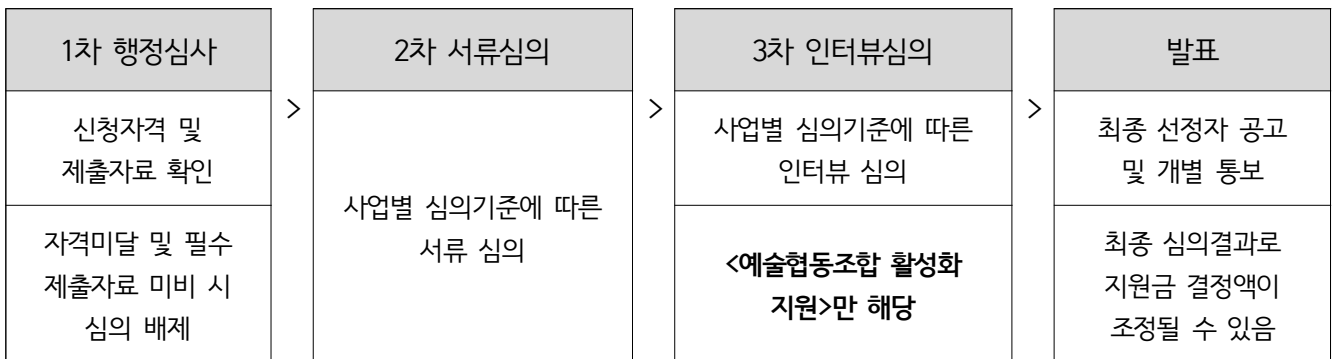
○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4.4.12.(금)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접수기간	2024.4.15.(월)~2024.4.29(월)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심의추진	2024.4.30.(화)~5.24(금)	◦ 행정심사,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사업별 상이)
결과발표	2024.5.27.(월) 예정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사업기간	2024.6.~12.	◦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

○ 추진절차



○ 심의절차



○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NCAS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방문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용량이 50MB 초과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구분	내용	문의처	
사업 문의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031-231-0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p>*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을 먼저 읽어보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접수 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p>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031-231-7234 • 시각 031-231-0893 • 공연 031-231-7235 	
	원로 예술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031-231-7234 • 시각 031-231-0893 • 공연 031-231-7232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 031-231-0867, 0870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031-231-0880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 1577-8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AS 고객센터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문턱 없는 예술지원사업을 위한 현장 안내

-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4.15.(월)~4.26.(금)
- 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경기상상캠퍼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동 2층 예술지원팀

※ 작성된 지원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한글문서 작업 등(지원신청서 작성 일체)는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일(2024.4.29.)에는 현장안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공모사업 세부안내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예술인 - 만 19세 ~ 만 39세 예술인 (2023.12.31. 기준) (1984.01.01. ~ 2004.12.31. 출생자)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 ~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2024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사업 세부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공모 선정 이후 '청년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 워크숍' 1회 이상 참여 필수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천원(정액)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small>예술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small> 2.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세부기준표 참고) <small>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small> 3.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p>[가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가산점 +2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산점 +2점) 또는 비상근직·단시간 근로자 구직 청년예술인 우대 (*가산점 +1점) <small>(증빙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 목록 확인)</small>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 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청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창작 환경 개선 [우대] <p>※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 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p> <p>(주안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 단체설립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립준비금을 활용. 향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성 판단 필요</p>

<p>제출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자립 활동 계획서 3) 예술 활동 실적자료 4) (선택사항)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해당 시) 5) (선택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해당 시) 6) (선택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해당 시)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_신청자명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은 24년 10월 31일까지로, 이전에 모두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은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등 사업 기간 내 현장방문이 필요할 시 필히 협조해야 합니다. ○ 2024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과 중복선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교부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업내용이나 예산이 크게 변경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개인) : 만 19세 ~ 만 64세 예술인 (2023.12.31. 기준) (1959.01.01. ~ 2004.12.31. 출생자) - 예술단체 : 공고일(2024.04.12.) 이전 설립된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준)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문화재단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분야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공모전 수상 포함) 선정이력*이 없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p>*신청 가능한 선정 이력</p> <p>❖ 아래 열거된 사업에 선정된 이력만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예외적으로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사업에 지원신청 가능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주관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모사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기문화재단</td> <td> ①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공모 (청년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②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중 <백만원의 기적>, <진심대면> ③ 경기 미술품 활성화(아트경기)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td> <td>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예술인복지재단</td> <td> ○ 예술인 복지 관련 공모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따라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산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td> <td> ○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형 공모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기초문화재단</td> <td> ○ 3백만원 이하의 창작준비 또는 리서치 단계 공모지원사업 </td> </tr> </tbody> </table>	주관기관	공모사업	경기문화재단	①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공모 (청년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②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중 <백만원의 기적>, <진심대면> ③ 경기 미술품 활성화(아트경기)	경기도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복지 관련 공모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따라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산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형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기초문화재단
주관기관	공모사업											
경기문화재단	①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공모 (청년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②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중 <백만원의 기적>, <진심대면> ③ 경기 미술품 활성화(아트경기)											
경기도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복지 관련 공모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따라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산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코로나19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형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기초문화재단	○ 3백만원 이하의 창작준비 또는 리서치 단계 공모지원사업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이후 설립된 예술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설립일 기준) ○ 기존 기초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생애 첫 지원 신청하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취소 조치) ○ 학내활동 및 졸업작품(졸업공연, 졸업전시, 학위청구전 등) 성격의 사업 ○ 전문 예술인 및 단체가 아닌 '동호회' 또는 '생활문화 성격의 모임 단체' 											

① 문학 분야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창작집 출간 지원 (소설, 시·시조,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시중 출판 가능한 작가 * 공모 선정 이후 '네트워킹 및 스토리 마켓 등에 2회 이상 참여 필수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5,000천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주민등록기준 1959.01.01. ~ 2004.12.31. 출생자) ○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 작가 또는 기성작가로 인정되는 작가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용 원고제출 원칙 ○ 문학은 전액 창작지원금(상금 방식)으로 지급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작가이력서 3) 심사용 원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장르</th> <th>시·시조</th> <th>소설</th> <th>평론(비평)·수필</th> <th>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th> </tr> </thead> <tbody> <tr> <td>분량</td> <td>10편</td> <td>단편 : 2편 중·장편 : 1편</td> <td>5편</td> <td>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용 원고만 제출 -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본만 인정(기 발간된 개인창작집 내 수록된 원고 불가) - 선정 공고 후 공모 선정된 신작 원고 필수 수록 외 출간 단행본 분량은 선정작가 자율 결정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생애첫문학_신청자명(필명) 	장르	시·시조	소설	평론(비평)·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	분량	10편	단편 : 2편 중·장편 : 1편	5편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장르	시·시조	소설	평론(비평)·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							
분량	10편	단편 : 2편 중·장편 : 1편	5편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작품(원고)는 문예지를 비롯한 동인지,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카페 등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 타 기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은 동일작품(원고)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 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지원에 제출한 원고(신작)은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또는 타 작품집에 수록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② 시각예술 분야

구분	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신작 전시발표 지원 *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경기도내 개인전 개최 또는 그룹전·초대전 참여를 통한 신작 발표가 가능한 작가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5,000천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 주소 작가 (주민등록기준 1959.01.01. ~ 2004.12.31. 출생자)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 창작 실비와 도록, 개인전 개최 또는 그룹전·초대전 참여 지원 * 전시 장소: 등록된 전시장 뿐만 아니라 다중 대상 전시발표가 가능한 곳까지 포함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신작 계획서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생애첫시각_신청자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작은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③ 공연예술 분야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창작 초연 발표 지원 *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경기도에서 신작공연의 초연 발표를 진행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액 8,000천원 ○ (단체) 정액 12,000천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 (주민등록기준 1959.01.01. ~ 2004.12.31. 출생자)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 전통, 다원 분야의 경우 작품 성격에 따라 연극, 무용, 음악 중 택1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에서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을 위한 공연 제작 및 발표지원 ○ 선정자(단체)가 직접 기획, 홍보, 대관 등 자체 추진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4) 주요 예술활동 실적 5) 이력서 (주요 참여 예술인) 6) 창작계획서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생애첫공연_신청자명(단체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으로 제작된 신작은 경기도 외 타 지역에서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개인의 경우 실연자, 연출가, 극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이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 자격으로 중복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원로 예술활동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예술인(개인) : 만 65세 이상 예술인 (2023.12.31.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예술단체 : 만 65세 이상 예술인(2023.12.31.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출연자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된 예술단체(공연 분야만 해당)
신청 불가	○ 공고일(2024.04.12.) 이후 전입 및 설립된 원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전입일자 혹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설립일 기준)

① 문학 분야

구분	내 용										
지원내용	○ 문학 창작집 출간 지원 (소설, 시·시조,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시중 출판 가능한 작가										
지원규모	○ 정액 3,000천원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경기도 주소 작가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등단 작가 또는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작가										
세부 지원방향	○ 심사용 원고 제출 원칙 ○ 문학은 전액 창작지원금(상금 방식)으로 지급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등단확인자료 3) 작가이력서 4) 주요 작품발표활동 실적(대표실적 3건) 5) 심사용 원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장르</th> <th style="width: 15%;">시·시조</th> <th style="width: 20%;">소설</th> <th style="width: 20%;">평론(비평)·수필</th> <th style="width: 30%;">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th> </tr> </thead> <tbody> <tr> <td>분량</td> <td>10편</td> <td>단편 : 2편 중·장편 : 1편</td> <td>5편</td> <td>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td> </tr> </tbody> </table> - 심사용 원고만 제출 - 미발간 원고로 구성된 개인 창작본만 인정(기 발간된 개인창작집 내 수록된 원고 불가) - 선정 공고 후 공모 선정된 신작 원고 필수 수록 외 출간 단행본 분량은 선정작가 자율 결정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원로문학_신청자명(필명)	장르	시·시조	소설	평론(비평)·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	분량	10편	단편 : 2편 중·장편 : 1편	5편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장르	시·시조	소설	평론(비평)·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포함), 희곡 등							
분량	10편	단편 : 2편 중·장편 : 1편	5편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유의사항	○ 제출 작품(원고)는 문예지를 비롯한 동인지,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카페 등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 타 기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은 동일작품(원고)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 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모지원에 제출한 원고(신작)은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또는 타 작품집에 수록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② 시각예술 분야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창작 지원 또는 미 발표작 전시발표 지원으로 아래 지원형 중 1건 선택 - (창작 지원형) 신작 창작계획에 대한 창작 실비 지원 - (전시 발표형) 미발표작 개인전 개최 또는 그룹전·초대전 참여 지원 * 전시 발표형은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경기도내 개인전 개최 또는 그룹전·초대전 참여가 가능한 작가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3,000천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경기도 주소 작가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작가의 신작 창작지원 / 미 발표작 개인전 개최 또는 그룹전·초대전 참여 지원 중 택1 지원 * 전시 장소: 등록된 전시장 뿐만 아니라 다중 대상 전시발표가 가능한 곳까지 포함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주요 예술활동 실적 3) 포트폴리오 및 작업계획서(창작계획서/전시계획서 중 택1)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원로시각_신청자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지원의 경우 타 기관·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은 동일 사업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시발표지원의 경우 미발표작으로 전시를 개최해야 합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③ 공연예술 분야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창작 초연 발표 지원 * 공모 선정 이후 2024년 연내에 경기도에서 신작공연의 초연 발표를 진행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액 5,000천원 ○ (단체) 정액 10,000천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만 65세 이상 경기도 주소 공연예술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단체 : 만 65세 이상 원로예술인 출연자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소의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 전통, 다원 분야의 경우 작품 성격에 따라 연극, 무용, 음악 중 택1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에서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을 위한 공연 제작 및 발표지원 ○ 선정자(단체)가 직접 기획, 홍보, 대관 등 자체 추진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4) 주요 예술활동 실적 5) 이력서 (주요 참여 예술인) 6) 창작계획서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원로공연_신청자명(단체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창작 지원으로 제작된 신작은 경기도 외 타 지역에서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추후 발견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개인의 경우 실연자, 연출가, 극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이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 자격으로 중복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창작공간 임차료 · 대관료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 불가 ○ 단순 친목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지원 불가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자가 소유 및 가족, 친족 간 거래 불가 ○ 2024년 타 기관으로부터 같은 공간의 임차료·대관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경기도 소재 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동 작업실 등)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4,000천원 ○ 최대 8개월 (2024년 6월~2025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부가세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10px;">지원 예시</td> <td>예1) 월 임차료 40만원×8개월×50% = 160만원 지원</td> </tr> <tr> <td></td> <td>예2) 월 임차료 60만원×8개월×50% = 240만원 지원</td> </tr> <tr> <td></td> <td>예3) 월 임차료 2백만원×8개월×50% = 8백만원 중 4백만원 한도 지원</td> </tr> </table> </div>	지원 예시	예1) 월 임차료 40만원×8개월×50% = 160만원 지원		예2) 월 임차료 60만원×8개월×50% = 240만원 지원		예3) 월 임차료 2백만원×8개월×50% = 8백만원 중 4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 예시	예1) 월 임차료 40만원×8개월×50% = 160만원 지원						
	예2) 월 임차료 60만원×8개월×50% = 240만원 지원						
	예3) 월 임차료 2백만원×8개월×50% = 8백만원 중 4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등, 개인 지원 신청 불가) ○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창작·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예술단체가 사용 및 운영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창작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공간 임차에만 국한되며, 그 외 일체 비용은 지원 불가(부대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건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3) 창작공간 현황 자료 4) 단체소개서 5) 예술단체 실적 자료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7)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 8) (선택사항)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 예정 해당자는 필수 첨부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창작공간 임차료_단체명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교부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창작공간 대관료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녹음, 연습, 보관, 발표 등)을 위한 전시실, 공연장 등 장소 대관료 지원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2,000천원 ○ 예산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관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px;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지원 예시</td> <td> 예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가능하며 부가세 제외 ※ 1인(단체) 당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 	지원 예시	예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지원 예시	예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경기도 소재의 창작활동 공간 대관(2024년 대관만 가능) (연습공간, 작업공간, 녹음공간, 창작발표, 작품창고 등 대관만 가능) ○ 대관 계약서 등을 통해 대관 증빙이 가능한 공간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증빙 안내를 위해 대관 공간의 용도 파악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횟수,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대관공간 개수는 3개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대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 ○ 창작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대관에만 국한되며, 그 외 일체 비용은 지원 불가(부대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건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 		

<p>제출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대관공간 활용계획서 3) 대관공간 현황 자료 4) 예술인(단체) 실적 자료 5) (선택사항)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애예술인 단체 증명자료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창작공간 대관료_신청자명(단체명)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교부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예약만료 등의 문제로 대관공간을 부득이하게 변동할 경우 반드시 비슷한 용도의 공간으로 변동하여야 합니다.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변동 발생 시 사업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분야 및 연령제한은 없으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공고일(2024.04.12.) 기준 경기도여야 함 ○ 대표자 및 구성원의 30% 이상이 공고일(2024.04.12.)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원(기선정단체)의 경우 제한하지 않음 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미만의 협동조합 - 사업실적, 업체 현황 증빙서류 제출(지정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② [예비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 의지 및 수행 역량을 갖춘 경기도 거주 예술인/단체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원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예비 조합원 리스트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역량 확인이 가능한 계획서, 예술활동경력 등 증빙자료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 불가 ○ 공고일(2024.04.12.)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 있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사업

◆ 사업 세부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결성 및 운영 지원 ○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지원 : 2024년 신규 모집을 통해 선정 ○ 성장지원 : 2023년 기선정단체 중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
세부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p>제출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3)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4) (협동조합)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예비협동조합)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및 발생일/신고일 보여야 함) 5) 단체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첨부 및 프로필 필수 기재 6) (선택사항)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 시) ○ 작성 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예술협동조합 활성화_조합명(신청자명)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사업체가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제출자료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 차년도 사업지원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된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으며, 추후 발견 시 사업 포기 및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심의 절차 중 적격한 단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